

기호 42.4
 연호

기안용지

(전화번호 465)

권결규정 2조 4항
 장전결사람

의뢰기관 기안과 기안자 기안자 서명
 결재자 도시계획국장
 결재
 접수 1062
 결재일자

보 구획처리 고시
 조 원지계획
 기 지적계상
 관

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경수 유 각안첨
 참 주 15
 제 목 향후 도시구획처리 사업 실시 공고

제 1 안 내부건립
 1. 66. 12. 24. 서울 도시계획 및 도시구획처리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시책이 따라야 하는 등 건립부 국고 제 11호 (1. 67. 1. 21) 도시 건
 설부 장관의 사업 실시 인가는 등 하여야 하는 사업 시행 지침은 관계
 유관기관에 따라야 하는 등 하여야 하는 등 하여야 하는 등 하여야 하는 등
 서울 도시계획 및 도시구획처리 사업 실시 인가는 건립부 공고 제 11호
 (1. 67. 1. 21)로 건립부 장관의 사업 실시 인가는 일차 구획처리 사업법 제 2조

확립
 인
 1월 15일

6-1 . 12 12

서울특별시

에 규정함 사업은 아래의 값이 실시함을 공고하는 사이며 관계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증람에 공함.

1967. 1. 25 .

서울특별시

1. 도시계획국의 사업 지역 구역

서울특별시 북대문구 연북동 일부

" " 상봉동 일부

" " 중회동 일부

" " 신대동 일부

약 1,140,000평

338

2. 사업 시행기간

작 1967. 1. 20

지 1970. 10. 31

3. 유의사항

가. 서울 도시계획 광우 도시계획국의 사업지구내 토지는 사업 실시 기간 중 (공사)에 사업 집행장 도시계획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시가 사용하게 되나 편서 예정된 지공 및 공사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작토선 및 농경작 호위를 금지한것이며, 상기 함위를 하고자 할 때는 구획정리 사업발령조서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신청이 필수는 받는다.

나. 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청, 구획정리 소유자의 인서도 첨부할것.

다. 공고문 신장의 사항은 이렇기 많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



시가 일체 책임은 지시 않음.

4. 본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단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하는바 미 수령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

제 3 안

수신 수신처 집조 관심 시 장

제목 방우 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시 통고

1. 근방 당시에서는 방우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귀족 소유토지에 관하여 건설부 공고 제 11호 (1967. 1. 21)에 의거 구획정리 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사업을 시행함을 통고하며,

2. 관계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총람에 관한.

가. 토지 내용

동 명	가 번	시 목	면 적	비 고

3. 본 사업 시행에 있어 의문 사항이 유한시는 당시 또는 지구 사업소에 눈두하여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공고본 사본 2부.

수신처. 병합 토지 소유자 명부

339

제 4 안

수신 동덕문 구청장 관심 시 장

서울특별시

6-4

제목 망우 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시 공고

1. 금반 당시에서는 건설부 공고 제 22호 (1967. 1. 21)에

의거 귀 구군내 일부 지역에 대하여 망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을
통고하며,

2. 지구현형도는 송부하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참에 공합
것.

첨부. 1. 공고문 1부.

2. 지구 점형도 1부.

제 5 안

수신 공로집장

반신 과 장

제목 망우 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시 공고

서울 도시계획망우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변경 공고문과 같이 시
행되오니 지도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사본 1부. 공.



400

건 신 부

건국사적청 (건.사.청) 361

1967. 1. 21

수신 서울특별시청

제목 서울특별시 방우지구 도시계획관리 사업 시행인가

서보구 412.5 - 4125 (1967. 12. 24)로 신청한 서울특별시 방우지구

도시계획관리 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함.

1967. 1. 21

건 신 부 상 군

다 음

- 1. 사업장 서울특별시 방우지구 도시계획관리 사업
- 2. 사업장 서울특별시청
- 3. 신청지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내동, 광우동, 민복동, 장문동, 동부동 각 1구.

4. 신청면적 1,114,212.00평

5. 신청기간 1967. 1. 21

401

1967. 12. 31

6. 가 의 가. 본 사업 계획 (계획) 중 국고 보조 5천만원의 시비 또는
일체 자금으로 수락하여 시행하겠.

나. 광우역전, 광장은 기본 계획에 없으므로 기본 계획 변경
은 하는 것 없도록 할 것.

라. 광장과 광우동간 진입 (33미터) 도로 계획은 적미한 기존
건물은 철거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로서 양측 폭장을 지양
하고 남측으로 폭장을 계획은 재 조정할 것.

마. 본 계획 내용은 서울시장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중탕에 관한
것. 끝. 6-5

사본

102

건설부 공고 제 11호

서울특별시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67. 1. 21

건설부장관

다 음

1. 사업명 서울특별시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2. 시행자 서울특별시청
3. 시행지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내동, 망우동, 범목동, 상봉동
중화동 각 1부.
4. 시행면적 1,144,292.50 평
5. 시행기간 자 1967. 1. 21
시 1970. 12. 31
6. 기타 군지 토면은 서울 시장에 비치고 관계인의 총합에 공
한다. 끝.

사본

402

6-6